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법상 임시운항 관련 규정이 없어 신규검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민편의를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 (제27조의2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임시운항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운항거리, 운항기간 등 임시운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가의 신청 및 허가증 반납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

나. 면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 마련 (별표3)

표준 강의안 또는 교재 부재로 기관별 강의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교재 감수제도 도입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임시운항허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운항하고자 하는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서류를 갖추어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

②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운항거리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
2. 운항기간 : 7일 이내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의 범위 내에서 운항)

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받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임시운항이 종료된 경우
2. 임시운항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 내용

별표 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가목 및 나목의 교육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임시운항허가 등) ①</u> <u>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u> <u>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운항하</u> <u>고자 하는 구역이 해수면인 경</u> <u>우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인 경</u> <u>우 시장·군수·구청장(이하</u> <u>“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u> <u>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u> <u>정하는 장비 및 서류를 갖추어</u> <u>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u> <u>다)를 신청해야 한다.</u> <u>②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사람은</u> <u>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u> <u>해야 한다.</u> <u>1. 운항거리 : 출발항으로부터 1</u> <u>0해리 이내</u> <u>2. 운항기간 : 7일 이내 (해뜨기</u> <u>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u> <u>지의 범위 내에서 운항)</u> <u>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사람이</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되는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3일</u> <u>이내에 발급받은 관서의 장에게</u> <u>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u>

한다.

1. 임시운항이 종료된 경우

2. 임시운항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연 락 처	(032) 835 - 2351